
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

설치자의 성명·주소	
전문교육기관의 명칭	
전문교육기관의 주소	
교육과정명	
지정조건	

위 교육기관을 「항공안전법」 제1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7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교통안전공단

직인